

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공고

당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7년 3월 24일 주주총회승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을 승인하였으므로,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다 음-

- (1) (주)에이텍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, 가전제품도소매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(주)에이텍커머스(가칭)을 설립하고 (주)에이텍은 존속함.
- (2) 본 분할은 단순, 물적분할로 (주)에이텍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고,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로 존속하는 회사도 이전되는 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.
- (3) 이의제출기간 : 2017년 3월 27일부터 2017년 4월 28일까지

2017. 3. 27.

주식회사 에이텍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(삼평동, 에이텍빌딩)

대표이사 한 가 진